

의안번호	2205868
의 퇴 인	조지연의원
회 답 일	2024. 12. 30.
추 계 번호	24B540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 신설(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	<u>환경부장관</u>은 제10조의3에 따른 자연공존지역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이하 “<u>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u>”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음(제1항) 1. 보호지역이 아니며 지리적으로 구별된 지역일 것 2. 관계 법령, 정책, 관리 계획 등 관리·관할체계가 갖추어진 지역일 것 3.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장기적·지속적인 보전·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일 것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u>환경부장관</u>은 제1항에 따른 <u>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u>을 위해 <u>필요한 조사</u>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10조의4 신설(자연공존지역 보전·관리 지원)	<u>환경부장관</u> 또는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은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 관리인 등에게 <u>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u>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1.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체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2. <u>환경부장관</u>이나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규정
	안 제10조의5 신설(자연공존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등)	<u>환경부장관</u>은 자연공존지역의 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u>자연공존지역 협의체</u>(이하 “<u>협의체</u>”라 함)를 <u>구성</u>하여 <u>운영</u>할 수 있음(제1항)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2 신설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	• 미대상 － 환경부에 따르면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23.1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자연공존지역(OECM) 주요 검토 대상 유형의 목록을 기구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당시 목록 구축을 포함하여 약 3억원 소요 ※ 다만, 정책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3억 미만 소요 예상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상 자연공존지역(OECM) 주요 검토대상 유형(예시)>																																																				
		검토대상 유형		OECM 잠재자원	자연환경 국민신탁	보전재산 / 보전협약지	10개소 / 9개소	환경부	자연휴식지	75.7km ²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	완충구역 9개소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8개 하천 198km ²	해수부	무인도서	절대보전/준보전 140개소 / 550개소	해양 용도 구역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6,020.8km ²	연구교육보전구역	1,637.3km ²	안전관리구역	3,999.0km ²		자율어업대상지역	1,133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관리	해수부/ 지자체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법)	47.16km ²	지자체	해양보호구역 외 갯벌지역	2,489.4km ²	도시지역(녹지지역)	12,592km ²	국토부	관리지역(보전)	10,116km ²	보호지구(생태계)	28km ²	자연휴양림	국립자연휴양림 등 192개소	산림청	전통사찰보존구역 / 사찰림	13.2km ² / 662.7km ²	국가유산청	세계자연유산구역 완충구역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2개소	농식품부	중요농업유산	17개소	민간	기업 CSR 지역, 종교성지 등	보전가치, 근거/수단 미흡
		검토대상 유형		OECM 잠재자원																																																		
		자연환경 국민신탁	보전재산 / 보전협약지	10개소 / 9개소																																																		
		환경부	자연휴식지	75.7km ²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	완충구역 9개소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8개 하천 198km ²																																																		
		해수부	무인도서	절대보전/준보전 140개소 / 550개소																																																		
			해양 용도 구역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6,020.8km ²																																																	
				연구교육보전구역	1,637.3km ²																																																	
				안전관리구역	3,999.0km ²																																																	
				자율어업대상지역	1,133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관리																																																	
		해수부/ 지자체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법)	47.16km ²																																																		
		지자체	해양보호구역 외 갯벌지역	2,489.4km ²																																																		
			도시지역(녹지지역)	12,592km ²																																																		
		국토부	관리지역(보전)	10,116km ²																																																		
			보호지구(생태계)	28km ²																																																		
			자연휴양림	국립자연휴양림 등 192개소																																																		
		산림청	전통사찰보존구역 / 사찰림	13.2km ² / 662.7km ²																																																		
			국가유산청	세계자연유산구역 완충구역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2개소																																																	
		농식품부	중요농업유산	17개소																																																		
민간	기업 CSR 지역, 종교성지 등	보전가치, 근거/수단 미흡																																																				
주: 위 표는 단순히 검토대상을 나열한 것으로 최종 등재 여부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2023.12.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10조의4 신설 (자연공존지역 보전·관리 지원)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0조의5 신설 (자연공존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등)	- 미대상 -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민간(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국가보호지역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자연공존지역 관련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024년 국가보호지역 포럼 참여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th>참여기관</th></tr> </thead> <tbody> <tr> <td>정부부처</td><td>7개</td><td>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방부, 산림청, 국가유산청</td></tr> <tr> <td>소속·산하기관</td><td>11개</td><td>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한국환경연구원</td></tr> <tr> <td>전문위원</td><td>14명</td><td>환경·해양·국토·농업·산림·문화재,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td></tr> </tbody> </table>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구분		참여기관	정부부처	7개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방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소속·산하기관	11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위원	14명	환경·해양·국토·농업·산림·문화재,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구분		참여기관												
정부부처	7개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방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소속·산하기관	11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위원	14명	환경·해양·국토·농업·산림·문화재,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2. 상세 사유

가. 자연공존지역(OECM) 개요

□ 개정안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존지역¹⁾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려는 것임

-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의 보전 등에 기여하는 효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
- (자연공존지역, OECM) 보호지역(Protected Areas)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
 -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보호지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중에서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의 보전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을 말한다.
12. “자연공존지역”이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향상에 장기간 기여하는 지역으로서 제10조의3에 따라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표 1] 국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 차이

	보호지역	자연공존지역(OECM)
정의	특정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 문화적·영적·사회·경제적·기타 지역적으로 연관된 가치의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지-내 보전 성과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운영·관리되는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18, 생물다양성협약)
목적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보전	목적에 상관없이 장기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에 기여
규제 여부	보호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 등 신규 규제 발생	기존 규제 외 추가 규제 없음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현재 국가보호지역 포럼의 논의를 거쳐 국내 자연공존지역 4개소에 대하여 시범 등재(2023년 기준)

[표 2] 국내 자연공존지역 시범등재 현황: 2023년 기준

구분	유형	전체 개소수 및 면적*(km ²)			
		개소	합계	육상	해양
자연공존지역(OECM)	보전재산	2	1.30	1.30	—
	－ 철원 두루미네땅	1	1.29	1.29	—
	－ 카르투시오 수도원	1	0.01	0.01	—
	하천구역(특별보전구역)	1	115.78	115.78	—
	－ 금강유역(본류)	1	115.78	115.78	—
	학술림	1	0.90	0.90	—
	－ 부산대 제3학술림	1	0.90	0.90	—

주: * 면적은 GIS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로, 실제 고시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나. 자연공존지역 보전·관리 지원(안 제10조의4 신설)

-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 관리인 등에게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현행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²⁾ 계약 체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및 면적(또는 개소), 해당지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계획 및 지원비용 단가 등이 필요함
 - 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자연공존지역 보전관리비용 지원})$
$$= \sum_{i,t} (\text{유형별 자연공존지역 면적(또는 개소)} \times \text{유형별 지원단가})_{i,t}$$
 - 이때 t 는 추계기간, i 는 유형별 자연공존지역(자연휴식지,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 무인도서, 보호수면, 전통사찰보존구역, 사찰림, 중요농업유산 등)
-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유형별 자연공존지역 지정 여부 및 면적 등, 해당지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참고자료]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개요 참고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개요

(환경부 제출자료)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 (개요) 지자체가 민간(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 유진 활동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지원)하는 제도
- (근거) 「생물다양성법」 제16조
- (목적) 생태계서비스 유진·증진 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보전 효과 창출
-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참여자 모집 공고 →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서 제출 → 자체 심사(추진협의회) 및 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 → 활동개시 →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활동) △식생 군락 조성·관리, △하천 정화, △산책로 조성, △야생동물 먹이 제공, △친환경 경작 등
- (대상지역) 각종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우수 지역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법 제16조, 시행령 제9조의2)

- (법) ① 생태·경관 보전지역, ② 습지보호지역, ③ 자연공원, ④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⑤ 야생생물 보호구역, ⑥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⑦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⑧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시행령) ⑨ 유네스코 선정 생물권보전지역, ⑩ 국제습지협약등록습지, ⑪ 상수원보호구역, ⑫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⑬ 수변구역

○ (제도 경과)

- ('02~'20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국고보조사업) 「자연환경보전법」 개정('97.8)으로 제도 도입, 철새 보호활동 중심('02년 3개 지자체 → '20년 25개)
- ('20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생물다양성법」 개정('19.12. 개정 / '20.6. 시행)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변경
 - * 기존 제도의 확대·개편
- ('21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국고보조사업) '지불제' 명칭으로 국고보조사업 개시('21년, 27개 시·군)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지원 현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지원 현황: 2022~2024.11 >

(단위: 백만원)

지역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시도명	시군명	사업비 계	국비 (30%)	지방비 (70%)	사업비 계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비 계	국비 (50%)	지방비 (50%)
합계		7,115	2,354	4,761	7,476	3,838	3,638	7,906	4,038	3,868
부산광역시	본청	100	50	50	100	50	50	100	50	50
인천광역시	강화군	60	18	42	60	30	30	60	30	30
경기도	안산시	60	18	42	60	30	30	60	30	30
경기도	고양시	107	32	75	102	51	51	102	51	51
경기도	파주시	110	33	77	140	70	70	140	70	70
경기도	김포시	150	45	105	150	75	75	150	75	75
경기도	화성시	43	13	30	44	22	22	44	22	22
경기도	연천군	80	24	56	230	115	115	230	115	115
경기도	여주시	13	4	9	10	5	5	10	5	5
강원도	철원군	1,100	330	770	1,100	550	550	1,100	550	550
충청남도	서산시	467	140	327	460	230	230	460	230	230
충청남도	당진시	100	30	70	160	80	80	160	80	80
충청남도	서천군	267	80	187	260	130	130	260	130	130
충청남도	홍성군	123	37	86	126	63	63	126	63	63
충청남도	예산군	107	32	75	100	50	50	100	50	50
전라북도	군산시	400	120	280	400	200	200	400	200	200
전라북도	익산시	167	50	117	180	90	90	180	90	90
전라북도	김제시	333	100	233	320	160	160	320	160	160
전라북도	고창군	167	50	117	166	83	83	166	83	83
전라북도	부안군	110	33	77	106	53	53	106	53	53
전라남도	순천시	1,333	400	933	1,360	680	680	1,360	680	680
전라남도	해남군	217	65	152	216	108	108	216	108	108
전라남도	진도군	147	44	103	160	80	80	160	80	80
전라남도	신안군	67	20	47	60	30	30	60	30	30
경상북도	구미시	80	24	56	84	42	42	84	42	42
경상북도	문경시	85	85		60	30	30	80	40	40
경상남도	창녕군	200	200		200	200		170	170	
경상남도	창원시	500	150	350	540	270	270	540	270	270
경상남도	김해시	200	60	140	200	100	100	200	100	100
경상남도	창녕군	217	65	152	216	108	108	216	108	108
경상남도	창녕군	0	0	0	100	50	50	100	50	50
경상남도	고성군	0	0	0	0	0	0	40	20	20
제주도	서귀포시	7	2	5	6	3	3	6	3	3
제주도	본청	0	0	0	0	0	0	400	200	200

※ '23년부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30% → 50%